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의료기관용

2017.12

보건복지부

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의료기관용

2017.12

보건복지부

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목 차

I.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개요 ····· 5

1. 배경 ····· 5
2.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 6
3. 법률의 주요 내용 ····· 7
   1) 목적 및 기본원칙 ····· 7
   2) 주요 용어 ····· 8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9
   4) 기록의 보존 ····· 12
4. 관리체계 ····· 13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13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4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14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15

II.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 17

1. 근거 ····· 17
2. 윤리위원회의 업무 ····· 17
3.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등록 ····· 19
   1) 위원회 구성 ····· 19
   2) 위원회 등록 ····· 19
4. 윤리위원회의 운영 ····· 21
   1) 운영 방향 정립 ····· 21
   2) 상담실 운영 ····· 21
   3) 회의 운영 ····· 21
   4) 보고 ····· 22
5. 윤리위원회의 업무 위탁 ····· 23
   1) 위탁 협약 ····· 23
   2) 협약 등록 및 제출 서류 ····· 23

III.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25
1. 의의 ····· 25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 26
1)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으로 확인 ····· 26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 32
3)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확인 ····· 36
4)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확인 ····· 39

IV.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 43
1. 이행 요건 ····· 43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 43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 46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47
1) 이행 ····· 47
2) 상황별 필요서식 및 절차 ····· 47
3) 담당의사의 교체 ····· 48
4) 기록 및 통보 ····· 49

V. 기록 보존 및 열람 ····· 53
1. 대상 기록 ····· 53
2. 보존 방법 ····· 53
3. 열람 제공 ····· 54

VI. 부록 ····· 55
1. 관련 서식 ····· 55
2. Q&A ····· 66

I.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개요

1. 배경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환자와 환자가족 및 의료진이 함께 논의하고 난 후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비록 그 수행의 결과가 당초 원하던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당시의 적절한 의학적 판단 및 조치에 따른 결과라면 의료진에게 환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이상 개개 의료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묻기는 어려움

- 그러나 1997년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른 보라매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면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음

-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이후 정부는 국민인식 조사, 관련 연구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이에 따라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음

-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음

2.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 환자는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처치와 돌봄 과정 중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돌봄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함
- 따라서 의사는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를 되도록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예상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환자나 환자가족과 공유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치료 방향과 치료 계획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함
- 이 때 환자나 환자가족과 치료 방향과 치료계획을 함께 논의한다는 말이 환자나 환자가족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3.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원칙

-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법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어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행**하여야 함

① 이행 대상 환자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법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함

가.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미리 작성한 의향서가 있어도 환자가 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의향서의 적법성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

다.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 위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함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을 말하며, ①, ②, ③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해당

√ 환자가족이 1명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1명의 진술로 가능

√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없음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

이 때, ①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③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함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

√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음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③ 이행

- 담당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하여야 함
- 이행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됨
- 담당의사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기록의 보존

-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관련 기록

√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4. 관리체계

-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하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각기 다른 체계에 따라 별도로 관리됨
- 여기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만 소개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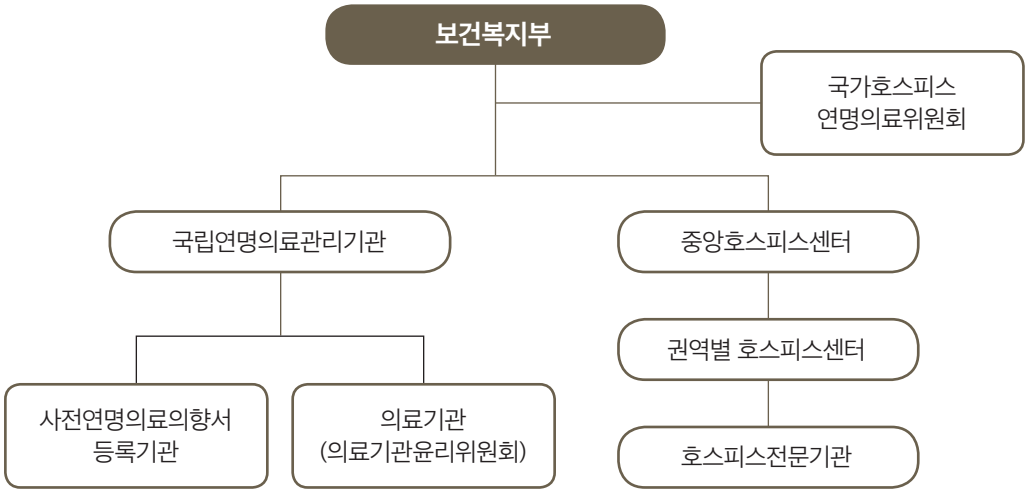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운영

법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요건을 갖춘 기관들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

법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등록해야 함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I.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1. 근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함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업무

-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해야 함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심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 내 모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관련 문제를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담당의사가 특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 교체를 심의하여야 함
  - √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표준 절차를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함

나. 상담

-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 √ 이 경우, 상담이 반드시 위원회 소속의 위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음
- 상담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교육

-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및 구성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의료윤리에 관한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평가·보완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관련 법률과 의료 윤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라.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시로 법에 따른 기록 및 보관의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현황 및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사례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직·인력 조정 및 사례별 적정관리 계획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마. 기타

-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함

3.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등록

1) 위원회 구성

-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구성요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
  - √ (위원)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
  - √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 √ (필수인원) 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지원인력)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

2) 위원회 등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 후 10일 이내에 법인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통해 등록을 신청함
-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기관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등록이 완료됨

■ 윤리위원회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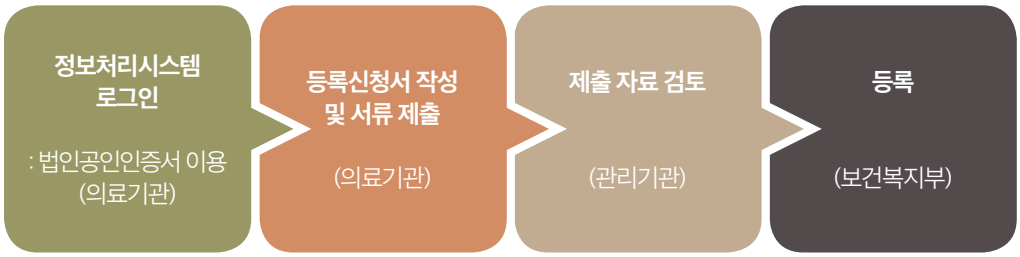

■ 등록 시 구비 서류

- 윤리위원회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윤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서류

- 위원별 성명, 성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및 직책, 전공분야, 위촉일, 기관과의 관계 등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력함

나.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기관별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나, 해당 기관에서 실제 윤리위원회가 운영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관장 결재를 받은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참조 1]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샘플)

1. 조직 및 구성
   1) 구성 기준 및 절차
   2) 위원회 현황
   3) 전담 지원 인력 및 조직 현황
2. 운영 규정 및 지침
   1) 기관 내 근거 규정 및 지침
      - *해당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지침명(제출 당시, 최신 규정에 대한 제정일자와 버전 기록)*
   2) 운영 목적
   3) 위원회 역할 및 책임
3. 활동 계획
   1) 심의
   2) 상담
   3) 교육
   4) 기타
      -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

4.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운영 방향 정립

- (운영계획 마련)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목적, 업무 범위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운영지침을 참조하여 해당 기관 윤리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운영 지침에 대한 종사자 교육 실시
  - 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인력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지원

2) 상담실 운영

- 위원회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함
- 상담인력이 꼭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으며, 윤리위원회 지원 조직 또는 인력에게 상담을 하게 할 수 있음
- 상담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3) 회의 운영

- (심의기준 및 절차 마련)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해야 함
- (회의 개최) 회의는 심의 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회의 방법) 심의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상이나 전자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음

- (안건 의결) 일반적인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법에 따른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 윤리위원회 위원 총 수가 15명인 경우, 8명 이상 출석과 5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과 관계없이 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음

- (기록 및 보존) 위원회는 심의, 상담 및 교육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밀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함

  특히, 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기록은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제2항)

4) 보고

- 해당 기관 내 연명의료 관련 통계 분석,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변경 사항 등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

5. 윤리위원회의 업무 위탁

1) 위탁 협약

-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미흡한 기관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수탁기관) 또는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업무 수행 전에 미리 정하여야 함

2) 협약 등록 및 제출 서류

- 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위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탁협약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탁 협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함
  - 위탁 내용
  - 위탁 기간
  - 위탁 비용
  - 위탁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위탁의 종료·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참조 2] 위탁협약서(샘플)

1. 협약 주체

위탁 기관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탁 기관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번호	
	위원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위탁 내용

-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3. 위탁 기간

- *위탁 수행 기간은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년 단위로 설정 (예, '계약일로부터 ~ 0년' 또는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시 가능)*
- *변경 시 다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4. 위탁 비용

- *위탁 기간과 위탁 내용에 따라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
- *단, 공용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비용으로 함*

5. 위탁에 따른 권리와 의무

- *윤리위원회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 수행 등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요청하는 사안과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

6. 위탁의 종료 및 해지 기준과 절차

- *위탁 종료 : 위탁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또는 위탁기간 중 직접 설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변경되는 경우 등 위탁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와 종료 이후 위탁 기간 중 수행된 업무 및 기록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탁 해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간의 권리와 의무 미준수 또는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기간 중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협약 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7. 위탁 시 준수사항

- *업무 위탁에 따라 취득한 비밀엄수 의무, 심의 또는 상담 과정 상 유의할 점, 협약 내용 위반 시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협약 주체 간 협의*

8. 기타 당사자 간 협의 사항

- *협약 주체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음*

III.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 의의

-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게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가 단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일 수 있음을 알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에 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환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환자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도록 함

- 또한,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평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예외적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함

- 의료진과 환자가족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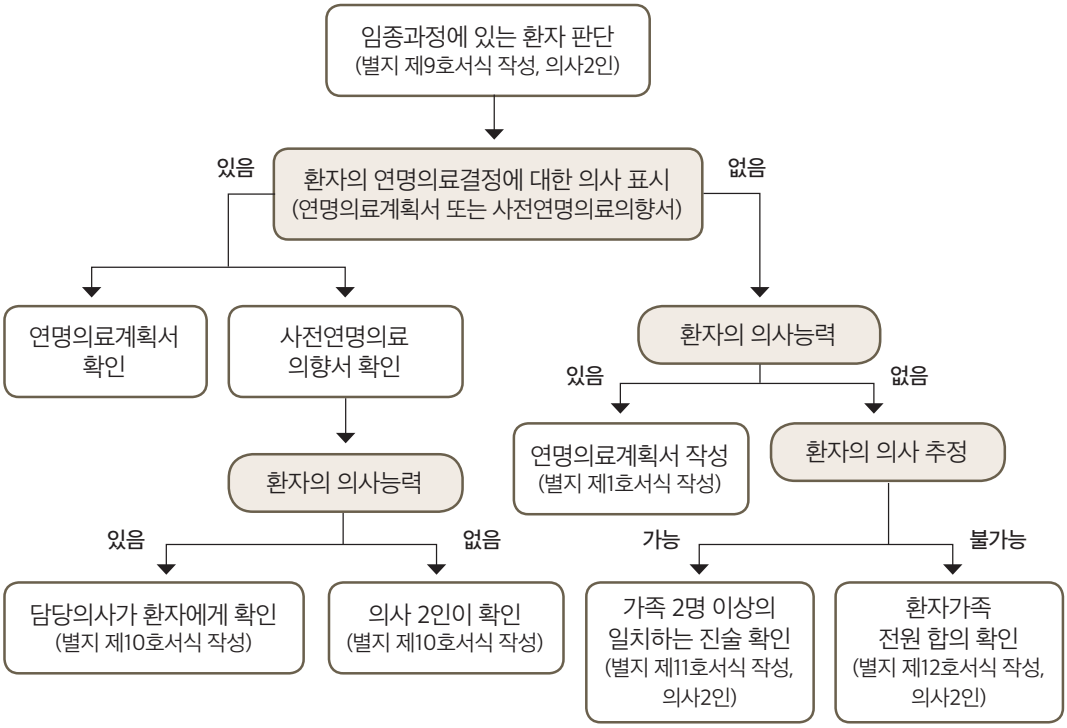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1)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으로 확인

가) 의의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특정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이후에는 바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함

나) 작성 대상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법 제2조제2호)	**말기환자** (법 제2조제3호 및 규칙 제2조)
대상 질병	질병 제한 없음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상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다) 작성 전 설명사항

-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①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돌봄의 방법과 그에 따른 예후 및 장단점 등을 제시하여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설명의 범위와 내용은 환자의 연령, 질병의 상태,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②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환자에게 시행될 수 있는 상황과 시행 방법을 설명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위 시술을 시행 시,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그 때 환자 스스로 해당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③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 가능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제공기관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용 의향을 표시하도록 안내하되, 의향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호스피스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을 설명함

④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효과 및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이행 후 10년 간 보관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설명
- 환자 사망 전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담당의사 교체 또는 의료기관 전원 등의 경우 의료진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조회될 수 있음을 설명

⑤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 지라도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회·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다는 사실과 철회 시 해당 기관에서의 기록이 삭제됨을 설명
- 연명의료계획서가 변경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여부와 동일하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 관리됨을 설명

⑥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환자나 환자가족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해당 기관 내 윤리위원회 이용 방법 및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안내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과정 권고]

-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대리결정을 경계하고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환자가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비가역적인 임종과정으로 진입되었다고 예측되고, 선택 가능한 치료법이 있으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미리미리 환자 및 환자가족과 향후 제공될 치료 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되기 전에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임종과정과 임종, 임종 후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돌봄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작성방법

- 연명의료계획서는 ① 수기로 법정 서식에 작성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 내 개발된 EMR 내 법정 서식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③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통보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기 또는 기관 내 EMR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스캔하는 등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❶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❷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 말기환자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❸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❹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❺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❻ 설명 사항	[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❼ 확인 방법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녹화 [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❽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❾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요령**

①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②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환자의 상태가 말기환자인지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를 확인하여 √표시함

③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을 표기하고, 이 때 소속 의료기관명은 소재 지역 및 분원 여부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함

④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대상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연명의료에 √표시함(중복 선택 가능)

⑤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대상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표시함(환자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담당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설명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표시하여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⑦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가 설명한 사항(⑥)을 모두 이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화, 녹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받음. 이 때 녹화 또는 녹취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함

⑧ 환자 사망 전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함. 그 밖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표기

⑨ 담당의사는 작성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마) 변경 및 철회

- 작성 및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환자는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담당의사는 그 요청을 반영해야 함
-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전 서식은 폐기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변경 결과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폐기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철회 결과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변경 또는 철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기존에 작성 및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하고, 시스템 내에서 변경 또는 철회 처리
  - √ 변경 및 철회 대상 서식이 시스템을 통해 작성 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또는 철회하면 자동으로 당초 작성 문서가 삭제됨
  - √ 변경 및 철회 대상 서식이 서면 또는 EMR로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 문서는 폐기되고 EMR 기록은 삭제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상 변경 또는 철회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당초 작성 기관에 변경 사실 통보 및 폐기 요청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어, 당초 작성 기관은 그 알람에 따라 폐기 조치할 필요
  - √ 변경 또는 철회 결과 정보처리시스템에는 변경 또는 철회된 연명의료계획서의 원본이 삭제되고, 변경 또는 철회 이력만 남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 할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보 할 것을 권장함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가) 의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9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조회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조회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법이 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인정

다) 확인

-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을 충분히 알고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확인. 다를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 가능
-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 가능
  - 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

라) 확인 결과 기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기록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❶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❷ 환자	성 명	생년월일

❸[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위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❺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❻[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❽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❾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요령**

①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②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③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표시함
(이 경우 ⑥~⑨는 작성 안함)

④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⑤ 담당의사가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해당 환자에게 보여서 연명의료에 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점과 동일한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 일자와 담당의사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⑥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어 ③~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함
(이 경우 ③~⑤는 작성 안함)

⑦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⑧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확인 일자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⑨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확인 일자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3)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확인

가) 의의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진술 확인

-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음
- 여기서 환자가족은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④형제자매가 포함됨
- 19세 이상인 환자가족만 진술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로 가능함
-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없음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가족이 진술 또는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다) 확인 결과 기록

-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로 기록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❶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❷ 환자	성 명	생년월일
❸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❹ 환자가족	총 명	※ 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❺ 진술 내용	환자가족 성명	진술 내용
	필요시 칸 추가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❻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❽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요령**

①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②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③ 환자의 의사로 추정될 수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항목에 √표시함. 구체적 항목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가족과의 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연명의료에 √표시함(중복 선택 가능)

④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의 총 인원 수를 기재함

⑤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환자가족의 성명과 해당 가족이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되 환자가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⑥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진술에 참여한 가족 전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필요 시 칸 추가 가능.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가족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녹화 등으로 대체 가능함

⑦ 담당의사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⑧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4)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확인

가) 의의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음

나) 환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음
- 환자가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되나 다음은 제외됨

①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③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

-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음

라) 확인 결과 기록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로 기록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❶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❷ 환자	성 명	생년월일
❸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❹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친권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❺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❻ [ ]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❼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환자가족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❽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❾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요령**

①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②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③ 환자가족의 결정을 반영하여 환자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연명의료에 √표시함(중복 선택 가능)

④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표시함

(이 경우 ⑥~⑦은 작성 안함)

⑤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⑥ 환자가 성인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표시함

(이 경우 ④~⑤는 작성 안함)

⑦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환자가족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하되, 환자가족 전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필요시 칸 추가 가능)

⑧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⑨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IV.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1. 이행 요건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고,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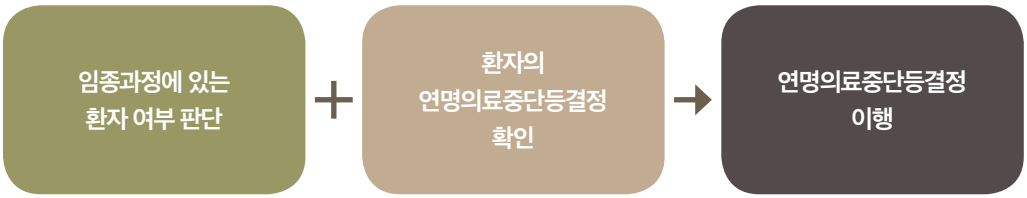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때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함
- 특정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설득력 있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임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해당 분야는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관 내에서 정하거나, 타 기관에서 초빙할 수 있음
- 다만, 임종과정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하므로, 원인 질환 및 개인의 특성, 제공받고 있는 돌봄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

■ [참조] 임종과정 판단기준

<대한의학회,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와 의학적 판단기준(2016.11)>

- 다음은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의 예로서 임상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다.
  ① 생체 징후 : 혈압저하(수축기 20mmHg이상 또는 이완기 10mmHg 이상), 분당 맥박수 증가(안정된 상태보다 20% 또는 10회 이상), 산소포화도 감소(90% 미만 또는 기존보다 8%이상 감소), 호흡수 증가, 체온 증가, 노동맥(radial artery) 맥박의 소실, 소변량 감소
  ② 신경계 변수 : 의식 수준의 변화, 목의 과신전, 코입술주름의 늘어짐, 동공반사의 소실, 눈꺼풀 닫힘이 안 됨, 성대에서 그르렁 거리는 소리
  ③ 특징적인 호흡 : 천명(death rattle) 발생, 체인-스토크스 호흡의 시작

- 임종의 임상상황은 아래와 같이 분류 된다.
  ① 급성 질환 환자 : 건강한 사람이 외상,사고, 급성 질병 등으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② 만성 질환 환자 : 만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관리 및 치료해 오던 사람이 만성 질환의 합병증, 중증 감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③ 만성 중증 질환 환자 : 중증 질환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3주 이상 충분히 집중치료를 했음에도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및 장기부전 보조장치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④ 체외순환막형산화 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또는 심폐우회로(cardiopulmonary bypass) 적용 환자 : 심각한 심정지 상태에서도 혈류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장기 부전을 일으킨 원인 질환의 회복 없이 수 주 이상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원인 질환의 궁극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거나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있을 때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치료이므로 임종과정 판단이 필요함.

- 임종과정 판단 시점
  √ 임종과정 진입시점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죽음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면 적절한 임종 돌봄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판단을 서두르면 부적절한 판단 논쟁이 대두됨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환자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여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임무이므로 의학적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치료에 따른 환자의 이익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나 부담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 판단을 준비해야 함

- 임종과정을 판단하려는 담당의사는 '해당분야 전문의 1명'과 의학적 판단을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기록하고 함께 판단에 임해야 함

- 임종과정을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이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❶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❷ 환자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❹ 전문의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❺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요령**

① 작성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함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②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진단받은 질환 또는 질병을 기입함

③ 담당의사의 인적사항 및 판단일시를 기준으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④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적사항과 판단일시를 기준으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⑤ 담당의사는 본인이 작성한 판단내용과 판단일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판단내용과 판단일시를 근거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임종과정 판단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 다음의 어느 하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 의사를 확인한 경우(별지 제1호서식)
- 담당의사가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별지 제10호서식)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하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별지 제10호서식)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별지 제11호서식)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의사)를 확인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1)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 이행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

  ex)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및 심폐소생술의 두 가지 시술에 대해서만 이행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됨
-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상황별 필요서식 및 절차

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여 이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별지 제9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별지 제1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별지 제13호서식)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여부를 기록하여 이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별지 제9호서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확인 및 기록 (별지 제10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별지 제13호서식)

다)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한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및 환자가족 진술 확인 내용을 기록한 후 이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별지 제9호서식) + 환자가족 진술 확인 및 기록 (별지 제11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별지 제13호서식)

라)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이행하는 경우

-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와 환자가족 또는 친권자 의사 확인 내용을 기록하여 이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작성·통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 (별지 제9호서식) + 환자가족 및 친권자 의사 확인 및 기록 (별지 제12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별지 제13호서식)

3) 담당의사의 교체

-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담당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함
- 윤리위원회는 교체 심의 이후, 교체되어 이행을 담당할 의사에게 심의 결과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4) 기록 및 통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시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확인한 후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함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과 유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명의료 시술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유보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이행 시점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 정함
  -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직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 시점이 이행 시점이 됨
  -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일주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의 과정 및 결과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간 보존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❶ 환자	성명	생년월일
❷ 이행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❸ 이행 의료기관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❹ 이행 일시	년 월 일 시 분	
❺ 이행 내용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❻ 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 ]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1호) [ ]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 제17조제1항제2호) [ ]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법 제17조제1항제3호) [ ]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법 제18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②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함(교체된 경우, 교체된 담당의사임)
③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④ 이행일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완료되어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록
⑤ 확인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한 내용에 √표시함 (중복 표시 가능)
⑥ 제시된 4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에 √표시함
⑦ 이행을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일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V. 기록 보존 및 열람

1. 대상 기록

-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는 자는 정직하게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

  -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 (허위 기록) 해당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9조제2호)

√ (양벌 규정) 허위로 기록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주문의 벌금형 부과. 단,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보존 의무 위반) 해당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40조제2항)

2. 보존 방법

-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문서는 해당 기관에서 마련한 적절한 관리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하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함

3. 열람 제공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환자가족의 연령 제한 없음)
- 법에 따라 열람 신청이 가능한 기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법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1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자가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에 '열람거부'를 표시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록 열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함

VI. 부록

1.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별지 제21호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 말기환자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녹화 [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연명의료계획서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관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문의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위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환자가족	총 명	※ 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진술 내용	환자가족 성명	진술 내용
	필요시 칸 추가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친권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 ]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환자가족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이행 담당의사	성 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이행 의료기관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행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이행 내용	[ ] 심폐소생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 혈액투석 [ ] 항암제 투여	
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 ]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1호) [ ]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 제17조제1항제2호) [ ]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법 제17조제1항제3호) [ ]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법 제18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1. [ ] 배우자 2. [ ] 직계비속 3. [ ] 직계존속 4. [ ] 형제자매 (1,2,3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대상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열람 신청 기록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결과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의 결과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료기관의 장 귀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장 귀하

제출서류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Q&A

Q 1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Q 2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Q 3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의 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심의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위임에 의한 심의는 불가능합니다.

Q 4 전공의도 담당의사가 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5 해당 분야의 전문의 중 “해당 분야”는 무엇을 뜻하나요?

-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Q 6 담당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반드시 동일 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소속된 외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Q 7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8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 되나요?

- 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9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 사전의료의향서)이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 사전의료의향서)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Q 10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 추진단이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 11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12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Q 13 담당의사인 전공의가 야간당직 중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의가 연락을 받지 않는데, 가족은 옆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아직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가족의 요청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즉, 응급상황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환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심정지로 인한 임종의 가능성이 미리 예측되었다면, 해당 환자 및 환자가족과 미리 의논하여 사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4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Q 15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요?

-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Q 16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한가요?

-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합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자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1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가족전원의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결정 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자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 및 확인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18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5살인 환자의 아들도 합의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 미성년자는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와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환자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원의 합의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Q 19 부모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에 있는 손자에 대하여 조부모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고자 하면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의 3대 직계가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모가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조부모-(사망한)부모-본인”이 표시됩니다.
- 부모가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 센터, 구청, 시청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DNR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서식입니다.
-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Q 21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의료기관용

2017.12

보건복지부

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